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935
----------	-------

발의연월일 : 2026. 8. 31.

발 의 자 : 이춘석 · 문진석 · 윤준병
한병도 · 임미애 · 안호영
박희승 · 朴芝源 · 김의겸
이연희 의원(10인)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지역은 광활한 개발 가능지와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연구·관광·농생명 등 복합용지를 갖춘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서, 향후 신기술 실증과 첨단산업 사업화의 전략적 공간으로 활용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새만금사업지역의 개발·이용 및 보전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규제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등의 규제특례와 신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체계적인 육성 등 기업의 전주기적 혁신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 제도를 도입하고, 새만금위원회의 심의 기능과 새만금사업 특별회계의 지원을 강화하며,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및 신기

술기업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가 연계되는 국가적 혁신거점으로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새만금사업지역을 신기술의 실증·사업화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법의 목적을 확대함(안 제1조).

나. “신기술”, “규제신속확인”, “신기술실증사업”, “임시허가” 및 “규제특례”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다.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실증특례 지정, 임시허가,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33조).

라.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관계 법령상 허가등의 필요 여부와 적용 규제를 신속히 확인 받을 수 있도록 규제 신속확인 제도를 도입함(안 제52조의5).

마.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신기술에 대하여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52조의6).

바.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가 법령상 기준·규격·요건이 없거나 기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의11).

사. 신기술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기술 지원기관 지정,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수립, 적극행정 면책, 포상 및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2조의13·제52조의14, 제73조의4·제73조의5 및 제77조제3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보전함으로써”를 “보전하고,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 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신고·지정·동의·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 “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제품(이하 “신기

술 서비스·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
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
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
한다.

제33조제1항 중 “및 환경보전”을 “, 환경보전 및 신기술의 실증을 위
한 규제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52조의6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관한 사항

9의3.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9의4. 제52조의14에 따른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제36조의16 중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으로, “직무상 알게 된”을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되었던”으로, “도용하여서는”을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1.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사람

2. 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거나 위원이었던 사람

제38조제2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6의2. 제52조의6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증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6의3.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용자

6의4. 제52조의13에 따른 신기술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6의5. 제52조의14에 따른 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등에 필요한 비용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1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의5(규제 신속확인)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새만금청장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해당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등의 필요 여부를 새만금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새만금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하며, 새만금청장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실

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의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 실증특례가 새만금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실증특례의 적정성
5.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6.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경우 환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이거나 신청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새만금청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와 심사기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의 범위에서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실증특례의 지정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7(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증특례 사업 성과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청장이 실증특례를 지정한 경우 해당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52조의6제8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첨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2조의6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새만금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⑨ 새만금청장은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9(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새만금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10(실증특례의 지정 취소 등) ①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의 지정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11(임시허가) ① 새만금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

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피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 임시허가가 새만금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임시허가의 적정성
5.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6.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새만금청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

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 여부와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새만금청장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

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8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임시허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배상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 사업 성과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12(임시허가의 취소) ① 새만금청장은 제52조의11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2조의11제3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52조의11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13(신기술 지원기관의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기술의 창출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연구기관, 단체 또는 법인을 신기술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 관련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이용·관리
2. 실증특례의 지정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

3. 신기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개선 지원

4. 그 밖에 신기술의 창출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14(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하 “신기술기업”이라 한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신기술기업의 입주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2.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증·검증, 표준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기술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

한 사항

5.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기술기업의 투자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3조의4 및 제73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4(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12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 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73조의5(포상) 새만금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5조제3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6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까지에”를 “제4항까지에”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의6제10항 및 제52조의11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
2. 제52조의10제3항 및 제52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
3. 제52조의10제4항 및 제52조의1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새만금사업 지역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이용 및 <u>보전함으로써</u>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보전하고, 신기술의 실증·사업화를 위한 핵심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u>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9. (생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9. (현행과 같음) 10. “신기술”이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말한다. 11.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란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정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승인·인증·검증·인가·등록·신고·지정·동의·협의를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u><신 설></u>	

<신 설> 제33조(새 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새 만금사업지역의 효	<u>· 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하여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신기술의 안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직접 실시하는 제한적 시험, 평가 및 기술적 검증(이하 “실증”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u> 12. <u>“임시허가”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 · 제품(이하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거나 법령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을 적용하는 것이 불명확하거나 불합리한 경우로서 안전성 측면에서 검증된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임시로 허가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u> 제33조(새 만금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
--	---

을적인 개발·관리 및 환경보
전 등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
만금위원회를 둔다.

②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신설>

10. ~ 14. (생략)

③ ~ ⑧ (생략)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공
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
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
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환경보전 및
신기술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
례-----

② -----
-----.

1. ~ 9. (현행과 같음)

9의2. 제52조의6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관한
사항

9의3.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
허가에 관한 사항

9의4. 제52조의14에 따른 신기
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
에 관한 사항

10. ~ 14.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6조의16(비밀 유지의 의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거나 해당하였던-----업
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되었던-
-----직무상 목
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

1. 공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

<u><신 설></u>	<u>이었던 사람</u>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생 략)	2. <u>새만금위원회의 위원이거나</u>
②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u>위원이었던 사람</u>
1. ~ 6. (생 략)	제38조(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 -----.
	1. ~ 6. (현행과 같음)
<u><신 설></u>	6의2. <u>제52조의6에 따른 실증특</u>
	<u>례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실</u>
	<u>증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u>
	<u>는 용자</u>
<u><신 설></u>	6의3. <u>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u>
	<u>허가를 받은 자에게 임시허가</u>
	<u>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u>
	<u>또는 용자</u>
<u><신 설></u>	6의4. <u>제52조의13에 따른 신기</u>
	<u>술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u>
	<u>비용</u>
<u><신 설></u>	6의5. <u>제52조의14에 따른 신기</u>
	<u>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u>
	<u>등에 필요한 비용</u>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52조의5(규제 신속확인) ① 새</u>
	<u>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활</u>
	<u>용하여 실증 또는 사업을 하려</u>

는 자는 새만금청장에게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존재 또는 적용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을 받은 새만금청장은 해당 신청이 다른 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소관 업무 여부 및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새만금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30일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할 경우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등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허가등에 필요한 조건 및 절차 등을 새만금청장에게 회신하여야 하

<신 설>

며, 새만금청장은 이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제1항에 따른 규제 신속확인과 관련하여 다른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새만금청장이 이를 처리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 신속확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6(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①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시험·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만금청장에게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사업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 사업을 기획·공모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
이 없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따른 기준·규격·요건 등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신청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
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
을 거쳐 실증특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
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저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
전한 보호·처리

3. 실증특례가 새만금지역에 미
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실증특례의 적정성

5.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의 검토결과

6.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
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
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7. 그 밖에 실증특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경우 환
경·안전·보건 등에 관한 조
건을 붙이거나 신청내용의 수
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
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
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
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
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새만금청
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
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
특례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실증특례를 신청

한 자에게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4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실증특례의 지정 여부와 심사기

준을 실증특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은 4년
의 범위에서 새만금청장이 정
한다.

⑨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
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⑩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제9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
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새만금청장과 별도 협의
를 거쳐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⑪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신 설>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실증특례의 지정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 지정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7(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 ①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2조의6에 따라 지정받아 시행하는 실증특례에 관한 활동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

도록 실증특례의 지정 사실 및 유효기간 등을 알려야 하고,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환경의 저해 여부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증특례 사업 성과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새만금청장이 실증특례를 지정할 경우 해당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하며,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신 설>

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관리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8(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의 연장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52조의6제8항에 따른 유효기
간의 만료 전에 실증특례 사항
과 관련된 법령이 정비되지 아
니한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
다.

③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
장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유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실증
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첩
부하여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
된 법령의 정비를 새만금청장
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

청할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실증특례 사항과 관련된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새만금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즉시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 따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하여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52조의6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라 연

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
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
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
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
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
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
야 한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실증특례
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⑧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
(제3항에 따라 법령 정비를 요
청한 자는 제외한다)는 유효기
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실
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새만금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신 설>

<신 설>

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 정비에 관하여는 제
4항을 준용한다

⑨ 새만금청장은 신기술 서비
스·제품 관련 시장의 활성화
를 위하여 제3항 및 제8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증특례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9(실증특례에 대한 지원)
새만금청장 및 관계 행정기관
의 장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신
기술 활성화를 위한 실증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제52조의10(실증특례의 지정 취
소 등) ① 새만금청장은 실증
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
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2조의6제3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날 부터 2년 이내에 타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 실증특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새만금청장은 실증특례의

<신 설>

지정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의 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 · 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
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
당 신기술 서비스 · 제품의 이
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
적 중지 또는 유통 중인 제품
의 회수 · 폐기 등 필요한 조치
를 명할 수 있다.

제52조의11(임시허가) ①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서 신기술 서비
스 · 제품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새만금청장
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사업
을 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기
전이라도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하여 임시허가 사업을
기획 · 공모할 수 있다.

1.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기준 · 규격 · 요건 등이 없
는 경우
2.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에 따른 기준 · 규격 · 요건 등

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의 검토와 새만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1. 해당 신기술의 혁신성 및 안전성과 그에 따른 이용자의 편익
2.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의 피해 여부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 임시허가가 새만금지역에 미치는 사회적·경제적 효과
4. 임시허가의 적정성
5. 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6. 규제의 적용 면제 또는 완화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후 책임 확보 방안
7. 그 밖에 임시허가에 필요한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기술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시험·검사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새만금청장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 행정기관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이 이를 소관으로 하여 처리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해당 임시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3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90일 이내에는 검토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9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신청의 내용이 종전에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특례로 지정되거나 임시허가를 받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내용·방식·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속처리 대상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결과 회신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⑦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를 하는 경우 해당 신기술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임시허가 여부와 심사기준을 임시허가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새만금청장이 정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임시허가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지 아니한 경우 새만금
청장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
간을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⑨ 제8항 단서에 따라 임시허
가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
에 새만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
항에 따른 임시허가가 부여된
경우 법령정비 계획을 수립하
여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
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
는 법령 정비에 착수하여야 한
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
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에는 관계 법률 개정안을 국회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⑪ 제8항 단서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
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
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
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된 경우 지체 없이 그 법
령에 따라 허가등을 받아야 한
다. 다만, 정비된 법령이 시행
전이거나 정비된 법령에 따른
허가등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에는 허가등 여부에 대한 결정
이 나올 때까지 임시허가의 유효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것
으로 본다.

⑬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인하
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
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임
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⑭ 임시허가의 지정을 받은 자

는 제13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과 별도 협의를 거쳐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배상 방법·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⑮ 임시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유효기간(연장된 유효기간을 포함한다) 종료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임시허가 사업 성과보고서를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⑯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12(임시허가의 취소) ① 새만금청장은 제52조의11에 따라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은 경우

2. 제52조의11제3항에 따른 조건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임시허가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임시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시허가의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하여 거짓·과장·기만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는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시허가가 취소된 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에 따른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 또는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⑤ 새만금청장은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사정의 변경, 그 밖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제52조의11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의 내용 및 조건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때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시허가 취

<신 설>

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13(신기술 지원기관의 지정)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 사업지역 내 신기술의 창출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신기술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기술 관련 사업의 육성에 필요한 조사·분석 및 그에 따른 정보의 이용·관리
2. 실증특례의 지정 및 임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지원
3. 신기술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정책의 발굴 및 제도개선 지원
4. 그 밖에 신기술의 창출 및 관련 사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 설>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2조의14(신기술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신기술을 창출할 목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거나 신기술 서비스·제품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이하 “신기술기업”이라 한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기술기업에 대한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주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신기술기업의 입주 및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신 설>

2. 신기술의 연구개발, 인증·검증, 표준화 및 지식재산권 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신기술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신기술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전문인력의 양성 및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신기술기업의 투자 유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3조의4(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52조의5부터 제52조의12까지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

<u><신 설></u> 제75조(벌칙) ① . 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u><신 설></u> <u><신 설></u>	<u>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u> <u>제73조의5(포상) 새만금청장은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신기술 또는 신기술 서비스·제품 관련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u> 제75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1. ~ 3. (현행과 같음) <u>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6에 따른 실증특례의 지정을 받은 자</u> <u>5.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2조의11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은 자</u>
---	--

<u>4. · 5.</u> (생략) ④ · ⑤ (생략) 제77조(과태료) ① · ② (생략) <u><신설></u>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만금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	<u>6. · 7.</u>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77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1. <u>제52조의6제10항 및 제52조의11제14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배상 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자</u> 2. <u>제52조의10제3항 및 제52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가 취소된 신기술 서비스·제품의 판매·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한 자</u> 3. <u>제52조의10제4항 및 제52조의12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u>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까지에----- ----- ----- -----.
---	--

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	-----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	-----
어통신위원회가 부과·징수할	-----
수 있다.	--.